[VIP 이란 해외순방]

취약시기 감찰 기강감사 결과보고

❑ 감사기간: 2016. 5. 2.(월) ~5. 3.(화)/ 2일간

❑ 감사인원: 4명

❑ 지적사항: 1건

2016. 5.

감 사 실
한국국토정보공사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 1

2. 감사대상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 사항 ····· 2

Ⅱ.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점검결과 ····· 3

3. 주요 실적 ····· 5

4. 분야별 지적사항 ····· 5

5. 감사자 의견 ····· 5

Ⅲ. 처분요구 현황 ····· 6

Ⅳ. 기타사항 ····· 6

【붙임】 점검 대상기관 현황 ····· 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취약시기(VIP 해외순방)에 공사 임직원의 복무점검을 통해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사상 구현을 위한 직원 비리·비위 행위의 사전 예방으로 반부패 및 청렴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대상

❍ 대상기관: □□지역본부 ■■지사 등 4개 본부, 6개 지사

＊ 노후사옥을 우선적으로 점검함

【첨부】점검대상 기관 현황 참조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2016. 5. 2.(월) ~ 5. 3.(화) _ 4일간

❍ 인　　원: 4명

일자	감사 반	감사인	감사일수	감사기관	비고
합계	총괄	감사2부장	4	6	
5. 2 ~ 5. 3.	1반	팀장 ○○○ 팀장 ●●●	2	3	
	2반	팀장 ◎◎◎ 차장 ◇◇◇	2	3	

4. 감사중점 사항

이번 감사는 'VIP해외순방' 및 '청와대(VIP)의 전국 특별 경계태세강화 지시'(3. 24.)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중점 점검함.

○ VIP 해외 순방

- 출·퇴근시간 준수 및 출장명령부, 외출부, 특근명령부, 최종퇴실점검부 등의 **기록·관리의 적정성 여부**
-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이나 업무태만 등 **복무위반 행위**
- 공용재산의 사적이용 행위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 근무시간 내·외 음주운전 및 도박, 사행성 행위

○ 비상시 대응체계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 각 기관별 비상연락망도 최신화 여부
  *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편성표 및 소방서·경찰서 등 비상 시 지원요청이 필요한 인근 기관들의 비상연락망
- 주요 문서(정보)의 보안 관리 상태

○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사옥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장마철 대비) 점검
  *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에 따른 전기·소방안전점검 여부

○ 기타 공직비리

-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금 횡령 사례
-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Ⅱ. 감사결과

1. 총평

대부분의 수감기관 직원들이「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관별로 예비군·민방위 대원을 감안하지 않은 채 현실성이 미흡한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서 비상연락망 양식의 재정비가 필요함

2. 점검결과

< 잘된 점 >

❍ **복무 및 선거관련**

- 무단이석, 지각, 조기퇴근 및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의 사례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위반행위를 하지 않음
- 공용재산(업무용 임차차량)의 사적이용 행위를 하지 않음

❍ **경계태세 강화 관련**

-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이 최신화 되어 있음

< 미흡한 점 >

❍ 복무 및 선거관련

- 일부 기관에서 사원증 및 문서방치 사례가 있음
- 외출부의 용무 및 초과근무 신청 사유의 구체성 미흡

❍ 경계태세 강화 관련

- 대상기관(6개) 중 5개 기관에서 민방위대편성표·예비군편성표 및 소방서·경찰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 등 비상 시 지원 가능한 인근 기관들의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비상연락망 양식이 기관마다 상이하거나 중복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있음

❍ 시설안전관리 관련

- 소화기 외관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누전차단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 누전에 우려가 있으며, 배수관이 일부 부식되고 내·외벽 균열 및 내벽 부식이 심함
-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면부가 파손되어 빗물 유입이 우려됨
- 건물의 일부가 습기로 도색이 벗겨지고 샤워장 및 내부 창틀부분 누수 방치 등

3. 주요 실적

(단위 : 건)

구분	총괄 (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현지 처분	제도 개선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고발			
건수 (인원)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4. 분야별 지적사항

❑ 처분요구

❍ 불합리한 비상연락망 운영

-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결과 각 기관마다 비상연락망을 중복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거나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있음
- 을지훈련 시 운영되는 비상연락망은 예비군·민방위대원이 반영되지 않고 작성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함

5. 감사자 의견

❍ 모든 수감기관의 직원들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양호한 근무자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 일부 기관에서 소화기 관리 및 내벽 부식이 심한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노후 사옥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연락망이 3가지 양식으로 중복 운영되고 있는 등 통일성이 없고 상황·인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비치하고 있음

❍ 따라서 사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기관은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현지 지도 하였으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인력적인 특성을 반영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처분요구 하고자 함

Ⅲ. 처분요구 현황

관 계 기 관	내 용	처분요구 등 종류		비고
		행정상	재정상	
◆◆◆◆◆	불합리한 비상연락망 운영	권고		

Ⅳ. 기타사항

❍ **(지적사항)** 해당 부서에 처분 요구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e-감사시스템 등록, 홈페이지 경영공시

【첨부】 점검 대상기관 현황

❍ 기간: 2016. 5. 2. ~ 5. 3.(2일간)

일자	점검 기관	정원(명)	감사 반	비 고
계	6개 기관	96	2개 반	
5. 2.(월)	□□지역본부 ■■지사	13	1반	
	△△△△지역본부 ▲▲지사	17		
	▽▽지역본부 ▼▼지사	19	2반	
	◁◁◁◁지역본부 ◀◀지사	16		
5. 3.(화)	△△△△지역본부 ▷▷지사	12	1반	
	◁◁◁◁지역본부 ▶▶지사	19	2반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 고

제 목 **불합리한 비상연락망 운영**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고 있다.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제1항에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사 ◆◆◆◆◆에서는 비상연락망 체계 및 양식을 전 기관(부서)에 배부하고 명절과 을지훈련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최신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동시에 연락(문자 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상연락망은 아래 [표] 에서와 같이 순차적으로 연락하게 되어 있어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신속성이 부족하다.

[표] 기관별 비상연락망 예시

또한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의 경우 비상시 국가에 동원되어 소속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비상연락망에 포함하고 있어서 비상연락체계에 차질이 우려되며 관내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연락처가 정비되지 않아 비상시 관련 기관의 신속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기관별로 비치하고 있는 비상연락망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황·인력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장)은 비상 시 국가에

동원되는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감안하고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